

인천도시관리계획(연희1·2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인천도시관리계획(연희1·2지구 지구단위계획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고시하고, 같은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관계서류는 서구청 도시개발과(☎ 560-4763)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2015. 8. 3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

1. 결정(변경)취지 :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마목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
 2. 위 치 : 서구 연희동 689-32번지 일원
 3.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 - 가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(변경없음)
 - 나. 용도지역·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·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(변경)조서 (변경없음)
 - 다.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 (변경없음)
 - 라.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- 단독주택용지의 가구 및 획지 결정(변경) 조서

연번	기 정					변 경 (안)				
	가구 번호	가구면적 (㎡)	획지		비 고	가구 번호	가구면적 (㎡)	획지		비 고
			위치	면적(㎡)				위치	면적(㎡)	
1	2-6	8,640.4	9	141.2		2-6	8,640.4	9	789.9	
			10	115.9						
			11	532.8						

※ 서구 연희동 689-32, -33, -34번지 획지 합병

○ 단독주택용지의 가구 및 획지 결정(변경) 사유서

가구번호	위치	변경내용	변경사유
2-6	9, 10, 11→ 9	획지합병	건축규모 확장(증축)

마. 건축물에 대한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배치·형태·색채·건축선에 관한 도시계획결정(변경) 조서 (변경 없음)

바.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 (변경 없음)

4. 고시도면 : 별첨(비치된 장소의 고시도면과 같음 : 구보계재 생략)

